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2

발의연월일: 2021. 9. 24.

발 의 자: 박상혁 · 김남국 · 김윤덕

문진석 • 민형배 • 박 정

안호영 · 어기구 · 이정문

임오경 · 최인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으며,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는 준공검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개별법에 따라 준공절차 이행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 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준공검사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	제31조(준공검사) ①
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u>준공검사를</u>	<u>대통령령으로</u>
받아야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u>관의 준공검사를</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
	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